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98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용우・박지혜・신장식

전진숙 • 박홍배 • 이학영

장철민 • 박지원 • 한창민

정혜경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고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메이데이(May Day)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역시 1923년부터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음.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

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메이데이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함.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하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노동자'로 함 (안 부칙 제2조제10항).

법률 제 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하는 사람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4호 중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 ⑦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 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 ⑨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재해근로자"를 각각 "산업재해노동자"로 한다.